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유효기간 연장 등 〉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5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유효기간 연장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6월 19일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에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유효기간 연장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고용 확대 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청년고용 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생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u>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② ----- ----- ----- ----- -----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 정은 <u>2026년</u> 12월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u>2029년</u>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최근 청년층의 고용여건은 최근 청년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¹⁾, 청년 실업과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경기 둔화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선도하여 민간부문의 고용 확대를 견인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5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고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고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고용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 의무제의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최근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청년고용 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최근 청년실업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공공기

1) 2026년 7월 고용동향(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 동월 대비 1.3%p 상승하였음.

관은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책무를 부담하는 만큼 개정안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고용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청년채용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동 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로써 공공부문이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청년고용을 선도한다는 정책적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도 84.6%의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제도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 보고”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상 청년고용 의무의 적용대상 및 예외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²⁾을 고려할 때, 어떠한 경우를 채용 실적이 부진한 경우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또한, 공공기관 등이 고용확대 계획과 이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확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계획의 수립·제출 및 이행결과의 보고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령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기관의 정원·재정 여건이나 신규채용 계획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를 요구할 경우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별 여건과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 의무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며, 현행 제도에서도 경영평가에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반영하고 의무 미이행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이행수단을 두고 있으나, 최근의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을 고려하여 미이행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

3)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정원, 기관의 업무량, 조직·인력 운영계획, 재정 여건 및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운영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년고용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단기간 내 추가적인 채용을 실시하기 어려운 기관도 있을 수 있음.

참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 (개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의무

○ '25년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97개소 중 462개소가 적용대상

* 적용제외 35개소(시행령 제6조제2항): ①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50% 이상 전문자격자 채용(18개소) ②정원 30인 미만(11개소), ③정원 10% 이상 감축(1개소), ④신규 지정(5개소)

□ (이행내용) 462개소 중 391개소 이행(이행률 84.6%, 전년 대비 1.3%p ↑)

○ 청년 25,435명 신규 채용(적용대상 462개소),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

(단위: 개소, 명)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적용기관(개소)	408	409	404	447	442	436	445	465	450	455	462
• 이행기관(개소)	286	327	323	367	395	370	385	406	353	379	391
• 미이행기관(개소)	122	82	81	80	47	66	60	59	97	76	71
• 의무이행율(%)	70.1	80.0	80.0	82.1	89.4	84.9	86.5	87.3	78.4	83.3	84.6
• 정원적용기관 기준	323,843	326,774	322,123	373,416	385,862	387,574	395,422	419,743	402,628	412,524	416,631
• 청년고용인원	15,576 (4.8)	19,236 (5.9)	18,937 (5.9)	25,676 (6.9)	28,689 (7.4)	22,798 (5.9)	22,793 (5.8%)	22,519 (5.4%)	18,175 (4.5%)	18,842 (4.6%)	25,435 (6.1%)

□ (미이행사유) 미이행기관 71개소의 주요 미이행 사유는 ▲결원부족 ▲경영효율화 등 경영상 사유 ▲인건비 부족 등

□ 기관유형별 이행결과

○ (공공기관) 308개소 중 257개소가 이행(이행률 83.4%, 전년대비 2.4%p ↑)

구 분	'21	'22	'23	'24	'25
적용기관(개소)	304	→ 318	→ 304	→ 306	→ 308
이행기관(개소)	262	→ 273	→ 231	→ 248	→ 257
의무이행율(%)	86.2	→ 85.8	→ 76.0	→ 81.0	→ 83.4

○ (지방공기업) 154개소 중 134개소가 이행(이행률 87.0%, 전년대비 0.9%p ↓)

구 분	'21	'22	'23	'24	'25
적용기관(개소)	141	→ 147	→ 146	→ 149	→ 154
이행기관(개소)	123	→ 133	→ 122	→ 131	→ 134
의무이행율(%)	87.2	→ 90.5	→ 83.6	→ 87.9	→ 87.0